

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			
제3조 이용기관의 제한	제 3 조 이용기관의 제한	<p>제 3 조(이용기관의 제한 <u>및 의무</u>)</p> <p>3.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발급한 상기의 가상계좌는 “갑”的 소유로서 “갑”的 고객인 지급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지급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“갑”은 반드시 상기 내용을 가상계좌 서비스 실행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“갑”的 고객인 지급인에게 안내하도록 한다.</p>	제 15조 제3항 을 제3조 이용 기관의 제한 및 의무 항목 으로 통합.
제3조 이용기관의 제한		<p>제 3 조(이용기관의 제한 <u>및 의무</u>)</p> <p>4. “갑”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제 2 조 제 2 항에 명시한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<u>가상계좌에 대한 송금인 및 송금목적 등 거래 내역을 즉시 요청할 수 있고, 이후 정기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	가상계좌 사용 제한 업무 관련 고객 의무 사항 추가

제9조 효력 및 계약기간	<p>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]년 []월 [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</p> <p>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</p>	<p>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]년 []월 [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<u>“갑”과 “을”</u>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</p>	오타자 정정
제10조 계약해지	1.7 “갑”이 제 2 조 2항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	1.7 “갑”이 제 2 조 <u>제2항</u> 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	오타자 정정
제10조 계약해지	2. 제 1-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, 제1-2항, 제1-3항, 제1-4항, 제1-6항 및 제1-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2. 제 1-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, 제1-2항, 제1-3항, 제1-4항, <u>제1-5항</u> , 제1-6항 및 제1-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	오타자 정정
제10조 계약해지		<u>4. 해지를 통지받은 “갑”은 “을”的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u>	고객의 이의제기 절차 명시
제15조 준용사항	3.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발급한 상기의 가상계좌는	삭제	제 15조 제3항

<p>“갑”의 소유로서 “갑”의 고객인 지급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지급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“갑”은 반드시 상기 내용을 가상계좌 서비스 실행 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“갑”의 고객인 지급인에게 안내하도록 한다.</p>		<p>을 제3조 이용 기관의 제한 및 의무 항목으로 통합.</p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